

의안번호	2209087
의 퇴 인	전재수의원
회 답 일	2025.4.30.
추계번호	25E16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39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63억원(연평균 △4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안 제86조의3)	-	-39	-40	-41	-43	-163	-41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 내용	비고																								
1	안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소득공제 한도 상향: 4천만원 ~ 5천만원 구간의 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 <table> <tr> <th col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안</th></tr> <tr> <th>사업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h>사업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r> <tr> <td>~4천만원</td><td>600만원</td><td>~5천만원</td><td>600만원</td></tr> <tr> <td>4천~6천만원</td><td>500만원</td><td>5천~6천만원</td><td>500만원</td></tr> <tr> <td>6천만원~1억원</td><td>400만원</td><td>6천만원~1억원</td><td>400만원</td></tr> <tr> <td>1억원~</td><td>200만원</td><td>1억원~</td><td>200만원</td></tr> </table>	현행		개정안		사업소득금액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600만원	~5천만원	600만원	4천~6천만원	500만원	5천~6천만원	500만원	6천만원~1억원	400만원	6천만원~1억원	400만원	1억원~	200만원	1억원~	200만원	
현행		개정안																									
사업소득금액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600만원	~5천만원	600만원																								
4천~6천만원	500만원	5천~6천만원	500만원																								
6천만원~1억원	400만원	6천만원~1억원	400만원																								
1억원~	200만원	1억원~	200만원																								

Ⅲ. 비용추계의 전제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되어, 2026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
 - 징수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차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제
- 2023년 귀속 소득 기준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국세통계 신고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
 -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규모별 자료를,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규모별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
- 현행 사업(근로)소득 규모별 1인당 노란우산공제 평균 공제액이 개정안에 따른 공제 한도 확대 금액 증가율만큼 증가한다고 전제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2023년 귀속 기준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해 구한 세수효과가 최근 3년 평균 재적가입자수 증가율(3.1%)을 따른다고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현황)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제도는 폐업, 노령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패자부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생애주기 맞춤형 공제제도임

-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5 ~ 100만원)의 부금을 납부하고 별도 의무 납입기간 없이 폐업·노령·사망 등 지급사유 발생 즉시 공제금을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수령

[표 2] 노란우산공제 운영현황

(단위: 건,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재적가입자	1,384,038 (13.0)	1,542,268 (11.4)	1,667,113 (8.1)	1,718,901 (3.1)	1,770,988 (3.0)	3.1
재적부금	148,308 (23.4)	180,786 (21.9)	216,908 (20.0)	250,192 (15.3)	285,104 (14.0)	14.6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 (연혁) 노란우산공제의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이 변화

- 2017년부터 공제한도를 사업소득규모별로 차등적용하기 시작, 이전에는 사업소득규모와 무관하게 300만원으로 설정
 - (사업소득 규모별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까지는 공제한도 500만원,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미만의 경우 300만원,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200만원
 - 동 기준 2024년까지 적용
- 2025년부터 공제한도를 확대하면서 사업소득금액 구간을 3개에서 4개로 확대
 - (사업소득 규모별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까지는 공제한도 600만원,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6천만원 500만원, 6천만원~1억원 400만원,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200만원

[표 3]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 연혁

	~2016	2017~2024		2025	
공제한도	300만원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4천만원	500만원	~4천만원	6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4천만원~6천만원	5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6천만원~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1인당 공제액 추정)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5천만원 구간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청인원 수 및 소득공제 금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2023년 귀속기준 사업(근로)소득금액 4~5천만원 구간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청인원수는 약 8.86만명(1.28만명)이며, 이들의 소득공제 신청액은 2,265.3억원(288.8억원)으로 이들의 1인당 공제부금 신청액은 256만원(226만원)으로 추정
 - 2025년부터 소득공제 한도 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 기준 1인당 소득공제 금액을 추정
 - 2023년 귀속 사업(근로)소득 규모별 1인당 노란우산공제 평균 공제액이 2025년부터 예정된 공제 한도 확대 금액 증가율만큼 증가한다고 전제
 - 즉, 동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사업(근로)소득금액 4~5천만원 구간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3년 귀속 1인당 소득공제액에 동 변화율(500/300)을 반영하여 현행 기준 1인당 소득공제액을 추정

[표 4]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현황, 2023년 귀속 기준
(단위: 명, %, 백만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현황, 2023년 귀속 기준			2025년 현행 기준
		신청인원	소득공제 금액	1인당소득공제 금액	1인당소득공제 금액(추정)
사업(근로)소득금액		(A)	(B)	(C=B/A)	(D)
근 소 중 소	4~5천만원 ¹⁾	12,764	28,883	2.26	3.77
	4~5천만원 ²⁾	88,586	226,529	2.56	4.26

자료: 국세통계연보(2024.12.)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 1) 국세통계연보에서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4~6천만원 구간 자료만 제공함에 따라, 동 구간의 분포가 균등하다고 가정하여 4~5천만원 구간을 도출하였으며, 근로소득금액 규모별 자료는 결정세액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여 제공함에 따라, 결정세액이 있는 자 기준으로 하였음
2) 국세통계연보의 종합소득 규모별 자료는 결정세액이 있는 자와 결정세액이 없는 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를 합한 자료를 사용함

- (소득공제 한도 확대 대상 인원수 추정) 2023년 귀속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청인원 중 소득공제 한도 확대 대상이 되는 인원수는 전체 인원 중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하는 인원 비중을 감안하여 추정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하는 인원 비중은 전체 노란우산공제 불입 인원 대비 소득공제 한도의 중간값인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하는 인원의 비율로 가정
 - 사업(근로)소득 규모별로 공제한도가 차등 적용되나, 소득 규모별·공제부금액 규모별 부금액 납부 현황 자료가 없어, 전체 인원 중 공제부금액 규모별 부금액 납부 비중을 차용함
 - 참고로 동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소득구간인 사업소득금액 4~5천만원 구간의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임
 - 2024.12월말 부금액 규모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재적가입자 중에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하는 비중은 36.2%로 나타남

[표 5]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확대 대상 인원수 추정
(단위: 명,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신청인원, 2023년 귀속 기준	소득공제 한도 초과 불입 비율 추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확대 대상 인원수 추정
사업(근로)소득금액		(A)	(B)	(C=A×B)
근 소 중 소	4~5천만원	12,764	36.20	4,644
	4~5천만원	88,586	36.20	32,229

[표 6]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부금액 규모별 현황(2024.12월말 기준)
(단위: 건, %)

월 부금액 규모별	건수	비중	비고(연 부금액 규모)
5만원	249,735	14.10	60만원
6~24만원	561,095	31.70	
25만원	315,835	17.80	300만원
26~50만원	507,286	28.60	
51~69만원	12,962	0.70	
70만원	9,324	0.50	840만원
71~99만원	7,908	0.40	
100만원	106,843	6.00	1200만원
합계	1,770,988	100.00	
(참고) 월 부금액 25만원 초과	644,323	36.20	연 300만원 초과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 (세수효과 추정) 현행 사업(근로)소득 규모별 1인당 노란우산공제 평균 공제액에 각 구간별 공제한도 확대 금액 증가율을 반영하여 개정안에 따른 1인당 평균 공제액을 추정한 후, 양자의 차이에 실효세율 및 소득 공제 한도 확대 대상 인원수 추정치를 곱하여 총 세수효과 추계
 - 현행 사업(근로)소득 규모별 1인당 노란우산공제 평균 공제액이 개정안에 따른 공제 한도 확대 금액 증가율만큼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 추정
 - 이를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각각에 대해 추계한 후 합산하여 세수효과 도출
- (세수효과) 개정안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할 경우, 2023년 귀속기준으로 근로소득세는 4.0억원, 종합소득세는 31.4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

[표 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의 세수효과, 2023년 귀속 기준
(단위: 명, %, 백만원)

		소득공제 확대 대상인원 추정	1인당 소득공제 (현행)	1인당 소득공제 (개정안)	1인당 공제 증가액	과세표준대비 산출세액비율 (%)	1인당 세수감소 효과	총세수감소 효과 ³⁾
사업(근로)소득금액		(A)	(B)	(C)	(D=C-B)	(E)	(F=D×E)	(G)
근 소 중 소	4~5천만원 ¹⁾	4,644	3.77	4.53	0.75	11.5	0.09	401.8
	4~5천만원 ²⁾	32,229	4.26	5.11	0.85	11.4	0.10	3,144.0

주: 1) 국세통계연보에서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4~6천만원 구간 자료만 제공함에 따라, 동 구간의 분포가 균등하다고 가정하여 4~5천만원 구간을 도출하였으며, 근로소득금액 규모별 자료는 결정세액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여 제공함에 따라, 결정세액이 있는 자 기준으로 하였음
 2) 국세통계연보의 종합소득 규모별 자료는 결정세액이 있는 자와 결정세액이 없는 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를 합한 자료를 사용함
 3) 총세수효과는 1인당 세수효과에 소득공제 확대 대상 인원수를 곱하여 도출, 소득공제 확대 대상 인원수는 동 공제 신청인원수에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하고 있는 인원수 비중 추정치(약 36.2%)를 곱하여 도출

4. 세수효과 요약

- (귀속 기준) 소득 발생연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06억원(연평균 △4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8]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소득 발생연도 기준, 귀속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합계	-39	-40	-41	-43	-44	-206	-41
근로소득세	-4	-5	-5	-5	-5	-23	-5
종합소득세	-34	-35	-37	-38	-39	-183	-37

- (징수 기준) 소득세 세목별로 징수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소득세는 2026~2030년 동안 총 163억원(연평균 △4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징수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차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제

[표 9]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징수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합계	-	-39	-40	-41	-43	-163	-41
근로소득세	-	-4	-5	-5	-5	-18	-5
종합소득세	-	-34	-35	-37	-38	-144	-36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강민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민지	02-6788-4746	min1231@assembly.go.kr